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2. 1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3항 및 동법시행령제6조1항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단독주택·다세대주택과 형평성에 맞게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4조 【별표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현실에 맞게 강화
 - ◆ 개정내용

시설물	현 행	개 정(안)
공동주택 (아파트, 연 립주택)	시설면적 150㎡ 당 1대	시설면적 120㎡당 1대
		<u>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u>
		<u>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u> <u>당0.7대를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u> <u>것을 적용한다.</u>

3. 참고사항

- 주차장법 제19조3항 및 동법시행령제6조1항 『별표1』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계변경) 이 조례는 시행이전 건축허가 된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규모이하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허가당시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과 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7세대(가구)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5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u>시설면적 120㎡당 1대</u> <u>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를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u>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과 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타의 경우에는 80㎡당 1대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7세대(가구)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5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신설>	5. (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120㎡당 1대 <u>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0.7대를 계산한 주차대수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u>

현행		개정안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